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권기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10. 27.

발 의 의 원 : 권기훈·김재우·박소영
손한국·윤권근·이성오
이재숙·정일균·하병문
의원(9명)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아동급식 지원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급식지원의 안내와 홍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
- 3. “온라인플랫폼”이란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아동급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구·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구·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 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각 구·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예산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하고 비대면 주문결제 가 가능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급식 지원 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내 및 홍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구·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급식지원의 관리) 시장은 각 구·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 12. (생략)
- ② ~ ③ (생략)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형활동 지원 서비스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7. (생략)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공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 2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성 별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μ g RAE)		티아민 (비타민B ₁)(mg)		리보플라빈 (비타민B ₂)(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평균	관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유치원생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남	초등	1~3학년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2.4	3.0	
	4~6학년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17	267	2.7	3.7	
	중학생	840	20.0	177	250	0.30	0.37	0.40	0.50	23.4	30.0	267	334	3.7	4.7		
	고등학생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초등	1~3학년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2.4	3.0	

	학생	4~6학년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17	267	2.7	3.4	
			중학생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50	300	4.0	5.4
			고등학생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pm 10\%$ 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다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6조(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